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해역의 해양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경남서부해역(경상남도 사천·하동·남해)의 해양안전강화를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청사 방호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9급 8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25. ~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을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과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중 “48명”을 “50명”으로 한다.

별표 3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명 칭	위 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해양경찰서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광역시 남구

별표 4 중 총 계 “505”를 “51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0”을 “418”로 하며, 총경 이하 “402”를 “410”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12,026”을 “12,28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002”를 “11,191”로 하며, 치안감 “2”를 “3”으로 하고, 경무관 “6”을 “5”로 하며, 총경 이하 “10,993”을 “11,182”로 하고, 일반직 계 및 3급 또는 4급 이하 “1,024”를 각각 “1,09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 ② (생 략)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 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 을 두며, <u>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u> <u>은 경정</u> 으로, <u>동해해양특수구조</u> <u>대장은 경감</u> 으로 보한다. ④ (생 략)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과</u> <u>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u> - -----.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생 략)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 안감으로, <u>서해지방해양경찰</u> <u>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u> <u>장은 치안감</u> 으로, 그 밖의 지방 <u>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u> 으로 보 한다. ③ (생 략)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현 행과 같음) ② ----- ----- <u>서해지방해양경찰청</u> <u>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u> <u>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u> <u>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u>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 직급 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u>48</u> <u>명</u> 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50</u> <u>명</u> -----

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한다)은 3명을,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
 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
 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05</u>	<u>513</u>	+8
경찰공무원 계	<u>410</u>	<u>418</u>	+8
·	·	·	
·	·	·	
총경 이하	<u>402</u>	<u>410</u>	+8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026</u>	<u>12,285</u>	+259
경찰공무원 계	<u>11,002</u>	<u>11,191</u>	+189
·	·	·	
치안감	<u>2</u>	<u>3</u>	+1
경무관	<u>6</u>	<u>5</u>	-1
총경 이하	<u>10,993</u>	<u>11,182</u>	+189
일반직 계	<u>1,024</u>	<u>1,094</u>	+70
3급 또는 4급 이하	<u>1,024</u>	<u>1,094</u>	+7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